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89 발의연월일: 2024. 10. 15.

발 의 자:임이자·조배숙·이종배

김승수 · 고동진 · 최은석

우재준・박성훈・조승환

정동만 · 김용태 · 유용원

신성범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는 인간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더욱강화하고 있음.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관리와 저감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한국환경공단' 명칭을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변경하고,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시장에 관한 정책지원을 사업 범위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17조).

법률 제 호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환경공단법"을 "한국기후환경공단법"으로 한다.

제1조 중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을 "한국기후환경공단을 설립하여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사업을 수행하고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등"으로, "환경친화적"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친화적"으로 한다.

제2조 중 "한국환경공단"을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12호) 중 "감축사업"을 "감축사업, 기후위기 적응사업"으로 하여 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1의2. 배출권 거래시장 등 국내 탄소시장의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한 정책지원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한국환경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 제1조(목적) ----- 한국기후환 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ㆍ 환경개선 · 자원순환촉진 및 기 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 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환경공단(이하 제2조(법인격) 한국기후환경공단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하다.

제17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제17조(사업) ① -----호의 사업을 한다.

<신 설>

1. ~ 11. (생 략)

12.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 1. -----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 로의 이행 정책지원 사업

개 정 안

한국기후환경공단법

경공단을 설립하여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 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응사업을 수행하고 환경오염방 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u>등</u> -----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

- 1의2. 배출권 거래시장 등 국내 탄소시장의 활성화 및 안정화 를 위한 정책지원 사업
- 2. ~ 12. (현행 제1호부터 제11 호까지와 같음)

가스 감축사업 등 국가나 지 -- 감축사업, 기후위기 적응 사업 -----

14. ~ 25. (생 략)	14. ~ 25.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